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 ▶ 일시 2016. 12. 22 (목) 오후 2시
-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법률가회



발행일 2016년 12월 22일(목)

발행인 남인순, 권미혁, 홍정길, 윤용석 | **편집인** 정병오 | **편집** 박제민

발행처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법률가회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 ▶ 일시 2016. 12. 22 (목) 오후 2시
-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법률가회

토론회 순서

일시 _ 2016년 12월 22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_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오후 02:00~02:05(05") **인사** _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병)

오후 02:05~02:10(05") **인사** _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오후 02:10~02:40(30") **발제1. 종교인 성폭력의 실태와 과제**
_ **한국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오후 02:40~03:10(30") **발제2. 종교인의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검토**
_ **김병규** 변호사, 기독교법률가회 사회위원회

오후 03:10~04:00(50") **종합토론**

사회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신뢰운동본부장

토론 한국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김병규 변호사, 기독교법률가회 사회위원회

신희영 법무부 검찰국 검사

최혜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사무관

자료집 목차

- 인사말 04

- _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병)

- 인사말 06

- _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종교인 성폭력의 실태와 과제 08

- _ 한국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종교인의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검토 28

- _ 김병규 변호사, 기독교법률가회 사회위원회

- 법 개정 시 고려해야 할 점과 현실적 대안 40

- _ 신희영 법무부 검찰국 검사

- 종교계 성폭력 피해 대응 강화 방안 검토 42

- _ 최혜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사무관

인사말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입니다.

어제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인 동지(冬至)였습니다. 예부터 동짓날이 되면 사람들은 모든 빛을 청산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하루를 즐기고, 일가친척이나 이웃 간에는 서로 화합하고 어려운 일은 서로 마음을 열고 풀어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비상한 시국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홍정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님, 박은조 · 백종국 · 임성빈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님, 윤용석 기독교법률가회 이사장님, 함께 주최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문직 종사자의 성폭력 범죄 검거자 1,258명 중 종교인이 450명 (35.7%)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교회 등 종교기관에서의 성범죄가 공공연하게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종교인의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근본적인 대책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종교기관 내의 성범죄는 은폐되거나 비밀리에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피해자들의 용기에만 기댈 순 없습니다. 교회 내 성폭력 유형 대다수가 여신도, 여성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며, 장기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이런 피해는 종교행위를 빙자해 일어납니다.

4 •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교인의 경우 대부분이 자유직이라 윤리교육이나 징계를 강제할 수가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폐의 여지도 많아 조직 스스로의 자정능력 강화와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 근본적으로는 교회 내 뿌리 깊은 성차별과 목회자 중심의 우월적인 권력 구조, 목회자들의 낮은 성평등 의식 등 종교기관의 구조에 대해 우리는 되짚어봐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지금에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는 차별과 폭력, 배제가 없는 사회,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여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6년 12월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 인 순**

인사말

권미혁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입니다.

성탄절을 앞 둔 분주한 연말에다 ‘촛불’과 ‘탄핵’으로 상징되는 우리 역사의 대전환 앞에서 정말 바쁜 계절입니다. 이렇게 분주한 와중에도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먼저 기획하시고, 공동 주최를 제안해 주신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법률가회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와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폭력 문제는 “여성혐오”로 상징되는 남-녀 차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의식 문제, 수직적 위계질서가 강요되는 경직된 사회문화 등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부장적 인식이 여전한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절대 다수인 “여성”들은 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수사재판과정, 사회적 시선 등으로 인해 더 큰 이중삼중의 고통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적기에 효과적인 대처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매우 허다합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놀랍게도 지난 5년간의 성폭력 범죄 검거자를 전문직군별로 분류한 결과 “종교인”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상식을 깨고 “종교인”중에 성폭력 범죄 검거자가 많다는 것은 그 원인 파악과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내부의 성폭력 문제를 먼저 이슈화하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법률가회의 노력은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20대 국회 당선자 시절부터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한 출판계 성폭력, 민주노총 사업장내 성폭력 예방 활동 실태 점검 토론회 등 '성 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부문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다양한 의정활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원인과 대책, 함께 해 주신 분들의 고견은 입법 등 의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성폭력 예방과 종교계의 자정 노력에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단순히 종교계 내부의 성범죄 예방과 대책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존경의 상징인 종교계가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6년 12월 22일
국회의원 권미혁

종교인 성폭력의 실태와 과제

- 개신교 목회자의 성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 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1. 들어가는 말¹⁾

언론이 발표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조사 결과는 참으로 무참하다. 9월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2011- 2015)간 전문직 성폭력 범죄 검거자 1,258명 중 종교인이 450명(35.7%)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종교인이란 평신도가 아닌 종교지도자로서 종교인 성범죄 검거자는 2011년 89명에서 2014년 83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15년에는 전년대비 27%가 늘어난 105명으로 집계됐다(기윤실 요청에 의한 경찰청 통계보고는 111명으로 드러남). 박 의원은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은폐의 여지도 많다"며 "종교인에 의한 성범죄는 전문 직군 중 성범죄 건수가 가장 많고 계속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²⁾

이 통계는 형사 입건되었기에 드러난 것이고, 은폐된 종교지도자의 성폭력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에 '성직자'라는 단어를 치면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기사가 성폭력일 정도로 종교지도자의 성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지만 처벌받았다는 기록은 보기 드물다.

1) 이 글은 필자가 한국여성신학회가 발간한 『성과 여성신학』에 게재한 「교회 내 성폭력의 과제와 실태」를 중심으로 1988년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공청회 자료와 최근 목회자 성폭력 사례를 첨가하여 기술한 것이다.

2) 종교인 성폭력 범죄 5년간 450명...의사 4백 명 넘어", KBS 9월 19일자 뉴스. nforyou@kbs.co.kr

※ 참고자료 : 2010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전문직군별 성폭력범죄 검거인원 수에 관한 경찰청 정보 공개자료.

표1. 전문직군별 성폭력 범죄 검거인원수

구분 (명)	소계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기 타 전문직
'10년	622	69	3	26	108	12	46	358
'11년	650	69	3	17	93	10	47	411
'12년	685	88	5	22	87	10	44	429
'13년	747	95	9	31	96	13	53	450
'14년	762	83	2	27	93	15	68	474
'15년	861	109	1	36	111	11	63	530
'16년 11월	934	107	7	23	93	11	85	608

표2. 전문직군 중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검거인원수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1월
108	93	87	96	93	111	93

표3. 종교인 성폭력 범죄자 유형별 검거인원

구분 (명)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1월
계	108	93	87	96	93	111	93
강간·강제추행	98	89	81	92	83	105	88
카메라등 이용촬영	4	2	5	4	8	5	4
통신매체 이용음란	6	2	1	0	1	1	1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	-	-	0	1	0	0

비단 경찰청의 통계가 아니더라도 필자가 경험한 사례는 종교지도자의 성폭력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필자가 1999년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총무로 재임하던 때, 한 여신도가 목회자에 의해 자매가 성폭력을 당한 것을 계기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교회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공청회를 한 일이 있었다. 공청회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안기부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공청회를 취소하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도 아닌데 안기부가 왜 관심을 갖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들려주는 대답이 당시 사회가 불안정하던 때라 종교지도자들을 앞세워 사회정화운동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개신교에서 목회자 성폭력문제를 들고 나오면 천주교도 불교에도 이 문제가 불거질 텐데 한국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다는 것이다. 내친김에 “그럼 성직자들의 성폭력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안기부가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답했다. “차라리 잘됐다. 우리 원래대로 공청회를 하겠다.”고 답하고 공청회를 열었는데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 2개 중대가 보호를 해주는 속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적이 있다.

한국여신학자협의회가 1998년과 1999년에 교회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연 이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여신협이 한국교회에 정면 도전을 하는 것이냐? 기독교 단체가 교회에 먹칠을 해서 선교에 장애를 주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성폭력 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된다고. 몇 사람이 저지른 일을 공개해서 한국교회 목사 전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망신을 주느냐?, 그런 단체에는 선교비 후원을 할 수가 없다.”고 비난하였다. 남성목회자를 대신하여 사과한다거나,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준다는 격려해 주는 남성은 거의 없었다. 이런 비난은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신학자들에게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 사회의 경우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져서 성폭력 특별법이 1994년에 제정되고 가정폭력방지법이 1997년 12월에 제정되고 1998년 7월에 시행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성폭력의 규제 범위가 넓혀지고 형량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재정비됨과 동시에 1999년에는 성희롱에 대한 규제의 입법을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1999년 1월 시행)과 남녀 차별금지법의 제정(1999년 7월 시행) 등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사회에서는 성폭력이 단순 폭력이 아니라 성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받는데 종교에서는 여전히 성직자라고 부르는 한 종교지도자의 일탈행위 정도로 취급받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종교지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세상 법정은 물론, 종교 안에서 가해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채 신앙의 이름으로 묻어버리거나 오히려 성직자를 핍박하는 악마의 세력으로 박해를 받는 일이 허다하다.

20년 가까이 지난 오늘의 한국 종교계의 현실을 보면 종교계 성폭력은 20년 전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불교의 경우 인간극장에까지 출연했던 승려가 입양한 동자승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경우, 장성

의 한 스님이 초등학생 B양을 성추행한 이야기라든지, S비구가 비구니 성폭행 미수사건, 사주 보러 와서 알게 된 여신도를 사찰 주지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야기 등 승려들의 성폭력 문제가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어 대주교가 피소되는가 하면 세계 곳곳에서 아동성추행문제가 가톨릭교회의 치부로 불거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모 신부가 여신도를 성추행하다 6백만 원의 벌금을 받고 성폭력 40시간 이수 처벌을 받기도 하고 버스좌석에서 잠든 여신도를 성추행해 문제가 제기된 신부들의 이야기도 있다. 모든 종교에서 소위 성직이라고 하는 종교지도자들에 의한 여신도와 아동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정점에 개신교목회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종교지도자들에 의한 성폭력은 소위 “영적 아버지”에게 당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는 상처는 일반 피해자들보다 더 깊다.

솔직히 나는 다른 종교지도자들의 여신도나 여교역자 성폭력 문제를 언론을 통해서나 들리는 소리로 파악할 뿐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한다. 단지 불교에서는 불교의 논리, 가톨릭에서는 가톨릭의 논리가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차용당할 것이라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내가 몸담고 있는 개신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목회자에 의한 여신도 성폭력의 실태를 중심으로 종교지도자의 성폭력 문제 현상과 문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필자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총무로 재임하던 시절 부설기구인 기독교여성상담실에 들어왔던 사례를 비롯해서 최근 심각한 사회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목회자 성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교회 내 성폭력 실태와 그 대책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종교의 신학내용을 별개로 한다면, 종교지도자에 의한 성폭력실태와 문제점은 동일하게 나타나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 목회자를 통칭 종교지도자로 대입해 생각해도 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종교지도자가 목회자가 여성에 가하는 성폭력을 문제 삼은 것은 목회자가 한국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비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가 일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보다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2. 교회(종교) 내 성폭력의 실태와 유형

2-1. 교회(종교) 내 성폭력의 사례

2-1-1. 사례1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잘 살았다.”

피해자 이 씨는 동생 권유로 1989년부터 H교단의 예림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담임목사인 오목사는 자신이 영적인 의사라며 의사에게 가서 부끄러움 없이 치료를 받듯이 자신에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하도록 유도한 후 젊은 여신도들의 손을 주무르거나 포옹하는 것은 예사이고 자기 허

벽지를 안마하게 하기도 하였다. K라는 전도사는 두 번이나 낙태 경험이 있고 G라는 젊은 여신도에게도 정신병을 고치기 위해 음란 마귀를 내쫓아준다는 구실로 성추행하였다. 피해자의 경우 몸도 빼앗기고 재산도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아가려 했으나, 우연히 여동생의 일기장 속에서 여동생 또한 오 목사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나서는 이 일을 덮어둘 것이 아니라 발 벗고 나서야만 됨을 깨닫게 되었다.

피해자의 변화를 인식한 오牧사는 교인들 앞에서 자신이 '간음'의 죄를 범했다고 예배시간에 무릎을 꿇고 고백했다. 죄를 고백했으면 당연히 목사직을 그만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간음의 죄를 범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며 여전히 목회를 계속하고 있다. 그의 부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서 끝까지 왕으로 잘 살았다”며 “회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한다. 그러니 목사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남편을 두둔하기까지 했다.³⁾

그런데 그 부인이 전하는 말은 실로 기막힌 말이었다. 오 목사가 간음죄를 고백한 것은 그 여신도 때문이 아니라 교단 지방회 교역자 모임에서 교역자들의 여성편력을 들은 다음에 교역자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먼저 자신이 회개한다는 뜻에서 고백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 간음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다른 많은 목회자들에 비해서 자기 남편은 그래도 순수하다는 것이다. 죄를 고백했으니 용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기에서 '용서'라는 신학의 문제가 제기된다. 성폭력당한 여성들의 많은 경우가 이 '용서'의 덕목으로 피해자를 회유 내지는 협박을 하기 때문이다.

2-1-2. 사례2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김 권사는 P교단 수도노회 C교회에 3년째 출석하고 있었다. 1999년 11월 아이의 수능을 대비하여 40일 철야 작정기도를 드리던 중 교회 의자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일어나보니 목사가 김 권사의 얼굴을 만지고 있었다. 이때의 시간은 새벽 3시 반이었다. 김 권사가 자리를 피해 2층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하고 나오는데, 그 옆 식당 방문 앞에서 있었던 임 목사가 김 권사를 식당 방으로 밀어 넣었다. 치마를 당겨서 치마가 벗겨지고, 김 권사를 강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갖가지 추행을 다 했다. 김 권사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여도 너무나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그 후 김 권사는 많은 상처를 받았다.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면 조용히 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

3) 이 사례는 1998년 12월 3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주최로 열린 “교회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공청회”에서 피해자가 증언한 것이다. 이현주(가명), “피해자 증언”, 「한국여성신학 제36호」(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998. 겨울), pp17-18.

였으나 역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목사)에게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공갈 협박 설교를 하였다. 이에 김 권사는 남편과 장로들(시무장로 2명)에게 의논을 하였고, 11월 말경 대예배 후 장로들이 확인을 했다. 그 자리에서 목사는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사임하겠다고 하면서 오후 예배는 전도사가 인도하게 하였다. 이 날 오후 장로 2인, 권사 7인이 모여 더 이상 소문이 나가지 않도록 하자고 했고, 목사님 퇴직금도 규정 이상으로 드리기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목사는 “성관계만 안하면 죄가 안 된다. 성전에서는 누군지 몰라서 확인하려고 얼굴을 만졌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반복하였다. 그러면서 ‘꼬리달린 여우’, ‘첩년’, ‘목사 쫓아내는 여자’ 라는 등의 허위사실로 김 권사를 음해 비방했다.

이상과 같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 김 권사는 형사상으로 목사를 고소하여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에 기독교여성상담소는 이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 가기 전에 해결하고자 해당교단 총회장 및 노회장에게 3회의 건의서를 보냈으나 교단 측에서는 이미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목사 파직은 노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노회는 해당 가해자가 노회장인데다 노회장의 친구가 노회의 실세이다 보니 오히려 가해자편에서 피해자를 억압하였다. 그래서 일반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상담소측은 피해여성의 편에 서서 검사 및 판사에게 2차례의 진정서를 내고 변호사를 연계하고 재판방청 등의 재판과정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1년 이상의 재판을 진행한 결과 2001년 1월 30일, 임 목사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의 유죄 선언에도 불구하고, 가해목사의 노회에서는 목사가 목사 편을 들어야 한다며 L목사를 변호하고 나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다.⁴⁾

2-1-3. 사례3 “ 가제는 게 편, 사직하는데 뭘 또!.....”

중국동포교회의 집사인 A씨는 중국동포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S씨의 스토킹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교회개혁실천연대에 방문했다. A씨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K목사와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을 털어놓게 되었다. K목사에게 네 차례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K목사는 A씨와 한 전화 통화에서 네 차례의 성추행 중 두 차례는 인정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K목사를 직접 만나 성추행(A씨) 사실을 확인한 뒤 중국동포교회 쪽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성추행 등을 공개 사과할 것, 모든 직책에서 물러날 것, 치유와 회복을 위해 2년 이상의 자숙기간을 가질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피해자 A씨는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교단 총무를 찾아갔으나 교단총무는 K목사 편에 서서 K목사를 두둔하였다. 총무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K목사가 속한 노회에 K목사를 고소하였다.

4) 이 사례는 2000년 11월 3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에서 실시한 “교회 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교회법 토론회”에서 행한 피해자 증언에 의한 것이다.

이 사실을 접한 기장 4개 여성연대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첫째 교단은 K목사의 성추행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사회에 사죄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이 사태를 초래한 K목사는 목사직을 내려놓을 것, 둘째 교단의 총무가 구차한 변명으로 가해자 K목사를 편들고 두둔한 행동은 기장 교단이 성차별과 성폭력을 묵인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피해자와 교단 여성들에게 2차적인 상처를 가한 것으로 부적절하게 대응한 P총무는 교단과 사회에 사죄할 것, 셋째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성평등 교육과 목회자 성윤리교육을 교단, 노회, 신대원, 개교회 별로 실시할 것, 성차별 폭력 방지를 위한 교단차원의 성윤리 지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의와 평화, 창조의 보전에 관심하는 목회자들이 모인 기장생명선교연대는 “공은 공이고 과는 과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게 동료 목사로서 사죄한다는 말로 시작한 성명서에서 K목사의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K목사에게 목사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을 반납할 것, K목사를 두둔한 P총무가 총회에서 사과할 것, 노회는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처리할 것, 교단 내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교회 내 성 범죄 근절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어 교육에 힘쓰고, 성범죄를 저지를 목회자를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분명한 권징 조례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한 기장여성들은 101회가 열리는 총회에서 목회자 성추행 문제를 총회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하였다. 총회 안건은 미리 상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기타 안건은 총회 석상에서 서명을 받아 기타 안건 처리에서 다룰 수 있다. 총회에 참석한 여성총대들이 54명의 서명을 받아 기타 안건으로 “교단 성윤리 예방, 법과 제도 마련방안(성윤리강령) 제정의 건”을 상정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헌법위원회가 받아 연구하여,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통과되었다.

K목사는 성추문 논란에 휩싸이자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K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던 중국동포교회 부교역자 L목사는 오히려 A씨가 K목사를 음해하며 교회를 깨는 사탄이라며 A씨를 비난하였고, L목사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A씨를 사탄이라고 하며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아무도 피해자의 편에 서지 않았고 A집사는 목사님을 괴롭히는 자로 낙인찍혔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총회 앞에 사죄를 요구받은 기장 전 총무가 K목사가 비운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하면서 “지난 몇 주 간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올렸던 적은 없었다.”, “중국동포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K목사님을 정한 기간 내에 다시 불러 써주실 걸로 믿고,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교인들을 독려해 그 예배에 참석했던 A집사의 분노를 일으켰다.

지난 10월 18일 서울남노회는 제101회 정기노회를 열고 김 목사가 제출한 중국동포교회 담임 목사직 사임 청원과 성추행 피해 여성의 고소 건을 안건으로 다루었다. 서울남노회는 K목사가 각종 직책과 목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사임 의사를 밝혔고 노회원들이 그 뜻을 받아들인 만큼 고소 건은 성립될 수 없

는 사안”이라고 사직은 수리하고 고소 건은 기각하였다. 단 3년이 지난 뒤 복직을 청원할 수 있도록 내부 단서를 달았다. 교단 헌법에 의하면 면직된 자라야 3년이 지나면 복직이 가능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면직에 해당하도록 해 놓고 고소는 기각한 것은 노회의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 사례를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이 세 사건이 갖고 있는 교회 내 성폭력의 유형과 문제를 잘 드러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교회 내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후자의 경우는 사건에 임하는 교회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명확하게 법정에서 판결된 사건인데도 교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이므로, 현장증거를 제시하기 힘든 성폭력일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경우는 교회여성들이 피해자와 연대하고 적절히 대응할 경우 재발 방지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2-2. 교회(종교) 내 성폭력의 유형과 특징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강간, 성추행, 성희롱으로 구분한다. 성희롱이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기저귀 찬 여자가 어찌 감히 강단에 서냐?”, “내 앞에서 뺨스를 벗으면 내 성도요, 아니면 내 성도 아니다.” 라는 발언 등은 모두 성희롱에 속한다. 사회 같으면 형사고소 감인데 교회에서는 목사의 이런 말이 문제가 안 되고, 이런 말을 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며 여신도들이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 성희롱적인 설교를 듣고도 “아멘!”하는 신도들의 모습에는 기가 찰 지경이다.

교회 내 성폭력의 일반적 특징을 보면 폭력가해자는 주로 목회자가 여성신도를 강간과 성추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 경찰청 통계가 보여주듯이 교회 내 성폭력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목회자가 여신도와 청소년, 어린이를 상대로 가한 성폭력으로 특히 강간이 주를 이루고 있다. 피해 횟수는 상습적으로 장기간이다. 일반 성폭력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이 1회성 피해이기 보다는 한 성직자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1-2년은 보통이고 3년에서 6년, 심한 경우 10년을 넘는 경우도 있고(한국성폭력상담소의 보고에 의하면 20년 동안, 기독교여성상담소의 경우 15년 동안 계속된 것으로 보고된다.) 지속된 강간의 후유증으로 낙태를 한 경우도 여러 건이 있다. 또한 피해자 수는 대부분 여러 명이다. 한 목회자에 의한 피해자가 1명인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다. 보통 2명에서 많게는 그 피해자가 40-50명에 까지 이른다. 피해 장소는 주로 당회장실, 기도실, 교육관 등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기도원이나 별도 기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때로는 러브호텔이나 여관, 호텔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피해 동기는 개인 상담이나 신앙상담이 동기가 된 경우도 있지만 안수나 안찰 등 치유행위를 빙자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죄 씻음 등 영적 체험과 결혼을 빙자한 강간이 있다. 최근 드러난 현상으로는 목회자의 피곤을 풀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종 위원을

제도나 안마 요원의 형태를 통해 일어나기도 한다.

2-2-1. 교회 내 성폭력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⁵⁾

- ① 강제형, 성희롱형 : 여신도에게 사랑한다면 접근하여 강간 미수한 경우 / 젊은 여신도들의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경우 / 심방 중에 강간한 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 ② 유혹형(결혼빙자형) : 결혼을 빙자하여 여신도와 성관계를 갖고 폭행한 경우 / 여신도를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접근하여 유혹하며 성 농락한 경우 / 아내와 목회지향이 맞지 않아 목회하기 어렵고, 네가 진정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라며 접근하여 성 농락한 경우
- ③ 종교체험 빙자형 : 안수기도를 해준다며 성추행한 경우 / 자신이 영적 아버지라 하고 “딸아, 딸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간한 경우 / 사명을 받기 위해서 첫 열매(처녀막)를 바쳐야 한다며 추행하고 강간한 경우 / 성령체험(입신)을 빙자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한 경우
- ④ 치유 빙자형 : 죄를 씻기 위해서는 거룩하나 목회자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강간한 경우 / 성적인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한 후 음란마귀를 쫓아주겠다고 하면서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경우
- ⑤ 교육·상담 빙자형 : 성교육을 한다며 청소년과 미혼 여신도들을 성추행한 경우 / 홀로 사는 여신도를 상담해준다며 불러내어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여 임신케 한 경우
- ⑥ 협박형 : 자신과 성관계한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한 후 공개하겠다고 공갈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여신도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폭력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스토킹 한 경우
- ⑦ 기타 : 여신도들에게 담임 목사에게 충성을 맹세케 한다며 입고 있는 목사의 와이셔츠에 입술도장을 찍도록 한 경우 / 교회재정을 장악하기 위하여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여사무원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경우

2-2-2. 교회 내 성폭력의 주요특징

- ① 교회 내 성폭력은 목회자와 신도 간의 절대적인 위계관계 속에서 쉽게 일어나기 쉽다.

5) 이 성폭력 유형은 교회 내 성폭력추방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예방지침서」 개정증보판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절대적 위계관계 속에서 목회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 이상하게 느끼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당하다(신도 간의 성폭력도 대개는 남자 장로(권사)와 여성 신도 간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 역시 종교적 위계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해 목사는 자신을 영적 아버지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식하게 하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성경구절을 임의로 해석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거역하는 것을 불경스럽고 비신앙적이라고 피해자를 매도한다.

② 교회 내 성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성서를 오용해서 이루어진다.

교회 내 성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회자에 의해 성서를 오용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들 주의 종들은 성서를 인용해서 여신도를 유인하고 성폭력을 하면서도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킨다. 성가대원 20명을 농락한 H목사의 경우 여성을 불러놓고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부인이지만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둘째 부인 라헬이었다. 너는 야곱을 섬긴 라헬처럼 목사를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잘못된 소명감을 붙여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의 종의 말을 안 듣거나 주의 종에게 해코지를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협박성 성구를 들려줌으로써 여신도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⁶⁾ 이 레아와 라헬 사건은 캄보디아 선교활동에 참여한 여신도에게 같은 논리로 성폭력을 행사한 캄보디아 선교사의 성폭력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물의를 빚고 있는 ○교회 ○목사의 경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목사는 “에덴동산이 어떤 곳이나?”고 묻고 나서 피해자들이 “벗고 살았다.”고 대답하면 “영적인 사람은 벌거벗고 서로 보고 있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되어 있다고 하며 “영적인 사람은 입도 맞추고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과는 이 같은 아름다운 행위를 나누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육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정말 성결하고 죄가 없으면 벌거벗고 살아도 수치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죄가 없고 육이 없으면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도 죄가 되지 않은 것처럼, 솔로몬이 2천 명의 궁녀를 거느렸듯이 자기는 여인을 취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모세를 비난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듯이…”(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첩으로 취하자 모세를 비난했는데 그 사건 이후 문둥병에 걸렸다. 성서 기자는 이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라고 성서를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 ○목사는 에덴동산의 이야기로 여인들이 옷을 벗게 한 다음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너는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느냐?”

6) 이 글은 1992년 11월6-7일 동안 행해진 제10차 “한국여성신학정립협의회”에서 발표된 발제 중 하나다. 최영애, 「성폭력과 여성목회의 과제」, 『기독교와 성폭력』(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995), p.170.

하고 성서를 강조해서 여성들의 순결한 몸을 강탈했다. 목회자가 자기 정욕을 위해 성서를 인용하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성서를 오용하고 있다.⁷⁾

※ 성폭력 가해 시 성서오용의 예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부인이 있다.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둘 째 부인 라헬이다. 너는 라헬처럼 목사를 섬기기 위해 부름 받았다. / 에덴동산은 벗고 있어도 수치를 몰랐다. 영적인 사람은 벌거벗고 있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 /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되어 있다며 “영적인 사람은 입도 맞추고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과는 이 같은 아름다운 행위를 나누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정말 성결하고 죄가 없으면 벌거벗고 살아도 수치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 솔로몬은 2천명의 궁녀를 거느렸듯이 나는 여인을 취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듯 가장 소중한 것을 주의 종에게 바치라. /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가 있었듯이 너는 내 돕는 배필이라. 결혼한 배우자가 모두 돕는 배필은 아니다.

※ 성폭력 사실이 드러났을 때의 오용

“다윗을 책망한 미갈은 불임의 저주를 받았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여인을 취한 것을 비난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다. 주의 종의 말을 안 듣거나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주의 종의 잘못은 하나님이 벌하신다. / 피해자는 음란마귀가 씌어 목회자를 모함하고 있다. / 여자들이 문제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밀어 하나님이 용서해서 그대로 왕이 되었다. 회개하면 목사도 그대로 할 수 있다.

③ 교회 내 성폭력은 명백하게 성폭력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교묘한 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화간의 형태를 띤 강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교회 내 성폭력 특히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은 개인 상담을 하거나 안수 기도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다. 가해 목사는 자신의 행위를 죄를 씻거나 마귀를 쫓는 등의 종교적 행위이며 결코 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피해자를 세뇌하여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

7) 김경자(가명), “교회 내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 피해자 증언”, 『한국여성신학제38호』,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999, 여름호), pp.74-75.

교회 내 성폭력은 대부분 화간의 형태를 띤 강간인 경우가 많다. 명백한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성폭력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도 생긴다. 목회자에 의한 성폭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부를 하지 못함은 물론 자신이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여성도들은 목회자, 즉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주의 종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자신을 성폭력해도 그것을 폭력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가 목회자를 그런 방식으로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심지어 그런 일로 섬기도록 소명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폭행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한 방식으로 인식되어 거부를 하지 못한다. ○목사의 피해자도 마찬가지다. 처음 ○목사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피해자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과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섰다. 교회에서 ○목사의 말에 “아니요”라는 대답을 할 수 없도록 배워 온 피해자들은 몸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부하지 못했다. ‘목사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죄가 아닌가보다…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다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대학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이다. 신앙의 몽매성과 취약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학력 여성들이 이렇게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성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재판에서 화간으로 처리되어 피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④ 교회 내 성폭력은 발생의 용이성과 해결의 어려움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교회 내 성폭력은 그 행위가 밝혀져도 처리하기가 매우 힘들다. 한국 사회 또는 교회의 보수성으로 인해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어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개 피해 여성들은 순결 이데올로기와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다고 하는 비난을 그대로 수용함으로 인해 강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갖게 된다. 설령 고소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해도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목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를 보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었다.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인식을 했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리고 증거도 없어 법의 보호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보호도 받기 어렵다. 성폭력 당했다는 인식을 하고 피해사실을 알리면 십중팔구 피해자는 목회자에 의해 사탄으로, 마귀로 정죄되어 쫓겨난다. 가해자의 행위가 드러날 경우 ○교회처럼 “다윗이 범죄하면 다윗을 끌어안은 밧세바처럼 다윗을 안아야지 왜 배신하느냐, 당회장 과 같이 행동해야한다.”고 비난과 회유를 한다.

○교회의 경우 피해 시 목사의 행위에 대해 거부했던 여성은 1명뿐이었으며 나머지는 그대로 당했다고 한다. 개인 상담을 하거나 안수, 안찰을 하는 경우 이상한 느낌은 들었지만,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하고 생각하며,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자신을 불경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대학에서 여성학을 수강했다고 하는 피해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신앙을 빌미로 다가오는 경우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목사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큰 사명을 받았다” 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⁸⁾

보다 심각한 문제는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대개의 경우 피해자는 교회 내의 분파에 휘말려 이용당하고 결국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교회를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모두 교단에 호소를 해보았지만 교단에서 해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형사법으로 고소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측이 명예훼손으로 맞고 소되는 경우도 있다. MBC 방송에 보도된 바 있는 M교단 감독이며 대형교회인 K교회 목사의 경우 피해자를 맞고소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형을 살아야 했다. 피해자는 출소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를 했다.⁹⁾ 그러나 K목사 편을 들었던 한국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자신들이 잘못 알고 불의에 편에 섰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했다. 교회 내 성폭력의 문제를 ‘발생의 용이성과 처리의 난이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신도 관계는 절대적인 위계관계이며 이로 인해 성폭력의 발생이 용이해진다는 것이다.¹⁰⁾

⑤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후유증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일반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일반적 강간 후유증, 예를 들면 “나는 더럽혀졌다. 순결을 잃었다.”고 하는 순결이데올로기에 의한 상처 말고도 신앙적인 혼란까지 겪는다. 영

8) 피해자 증언, “교회 내 성폭력의 실태와 과제”, 「한국여성신학 제36호」(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998.겨울호), pp.19-20.

9)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에서는 이 사건을 접하고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노원지청에 정의로 운 재판이 되도록 건의서를 낸 바 있다.

10) 최영애, “교회내 성폭력의 유형과 문제점”, 「한국여성신학」(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998.12), p.22.

적으로도 그 결과는 심각하다. 피해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에 의해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혹은 회당에 의해서도 배신을 당한 것이다. 배신당하고 피해자가 되고 혼란스럽고 당황하며 두렵고 스스로를 비난한다. 큰 혼란과 죄책감 속에서 심리적 위기가 신앙의 위기로 빠진다.¹¹⁾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목회자에 대한 혼란과 불신이 급기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주의 종에게 당했으니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신앙의 위기와 더불어서 “나의 십자가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신앙적 혼란을 겪게 되며, 이 와중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사탄과 음란마귀로 규정하는 비난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¹²⁾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너희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가지 말라.”고 한 바울의 말을 빌려 교회문제를 세상에 맡겼다고 비난하며 신도들에 의한 협박에 시달리게 된다. 그렇다고 앞에서 보았듯이 피해자가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않고 교단에 호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교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직자의 도덕과 윤리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에도 남성중심의 교회는 이 일을 기피하고 있다. 오히려 일반 성폭력은 시효 때문에 법정까지 끌고 가기가 힘들지만, 교회에는 목회자의 윤리라는 게 있어 사건을 처리할 의지만 있으면 더 쉽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이 알려질까 쉬쉬하고 있다. 선교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었는데, 아무리 선교가 중요하다 한들 선교를 빌미로 인권을 차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어느 목사 한 분이 이런 일을 자주 밝히면 교회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성장하려면 차라리 그 교회는 문을 닫는 게 낫다.”고 대꾸해 주었다.

⑥ 근친강간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할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목회자에 의한 여성 성폭력은 근친강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해서 목사와 그런 관계를 맺게 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신앙의 무지 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고, 성경말씀을 인용하여 한 것이지 폭력이나 위협을 동반하여 강제로 강간한 것이 아니기에 종교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형태가 강간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목회자와 신도라는 절대적인 위계 하에서, 영혼의 아버지와 신앙의 자식이라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사실상 아버지가 자기 아이에게 강간을 하는 근친강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아버지가 자기 몸을 만지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양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비록 성년이라 할지라도 목회

11) 매리 포춘, “목회자의 비행 : 목회적 관계에서의 성폭력”, p.46.

12) 최영애, “성폭력과 여성목회의 과제”, 『기독교와 성폭력』(한국여신학자협의회, 1995), pp.164-165.

자에 의한 여신도 성폭력은 근친강간과 같은 범주에 넣어 처리해야 옳다.

3. 교회(종교) 내 성폭력 문제의 과제

3-1. 교회(종교) 내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의 공통 현상

- ① 처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며 오랜 기간에 걸쳐 성폭력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 ②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가해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 처음에는 완전히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나중에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시인하는 것을 피할 도리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는 합리화를 한다. 어떤 가해자들은 완전한 부인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대부분 피해자를 탓한다.
- ③ 피해자에 대한 교회나 기관의 반응 : 피해자가 속해 있는 교회나 기관은 피해자를 피한다. 그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분노 때문이기도 하고, “피해자 회피 현상” 때문이기도 하다. 신도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 할지 몰라서 피해자를 피하게 되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 ④ “무고”의 경우는 없다. 피해자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는다. 어떤 피해자는 “피해자가 주장을 할 때 제발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달라, 재미를 위해 이런 이야기를 꾸며낼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 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개교회는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3-2. 교회(종교) 내 성폭력 사건 해결의 문제점¹³⁾

- ① 교단 내에서 성폭력 문제를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 교회법 내에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어느 교단 법에서도 성폭력과 관련한 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가해 목사를 징계,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돌보고 치유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어떤 경우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개교회의 파벌

13) 이 부분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가 2000년 11월 30일에 실시한 “교회 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교회법 토론회” 준비를 위해 워크숍 한 것을 “왜 교회에서 성폭력 특별법이 필요한가?”하는 제목으로 윤귀남이 대표로 발제한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싸움에 피해자가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다.

- ② 교단이 없는 교회의 경우는 처리할 방도가 없다. 예를 들어 M교회의 경우 소속 교단이 없었다. 대형교회의 경우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 ③ 신도들의 목사승배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교회 내 성폭력은 추방되지 않는다. 목사에 대한 신성화는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목사를 고발할 수가 있느냐 하는 정서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시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어 해결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신도들은 “목회자를 모함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든지 “교회문제를 세상 법에 맡겼다.”는 등의 헐박과 심각한 폭력을 겪게 된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다루신다.”든지 “하나님께 맡겨라.” 혹은 “용서해라.” 등등의 말로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린다.
- ④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회에 사건을 상정할 경우 범죄자 자신이 그 구성원이 될 경우가 있다. 예수교장로회 합동 C교회의 경우 사건 당시 가해 목사가 노회장이었다. 또한 교단 내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가 가해자일 경우 범죄가 발생한 교회에 조사위원회가 내려오면 그 가해 목사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무마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원주침례교회의 경우 피해자가 노회에 진정하였으나 가해 목사는 손을 써서 조사위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성폭력 사건이 지역신문 등에 크게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고소한 장로를 제적해 버리고 몇몇 교회가 모여서 기존에 속해 있던 교단을 탈퇴하여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 ⑤ 교회가 지지체계가 될 수 없다는 불신이 교회 내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않는다.

3-3. 교회(종교) 내 성폭력의 신학 문제

앞에서 본 대로 교회 내 성폭력은 대부분 목회자에 의해 성서의 오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신학 문제가 제기된다.

- ① 첫째,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갖는 죄책감과 수치감, 절망감이다. 유교와 기독교의 순결 이데올로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정조를 상실했다는 수치감에 사로잡힌다. 또한 혼외정사는 죄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죄책감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절망이 겹치

면 피해자는 헤어날 길이 없다. 자살하자니 자살은 죄니까 죽을 수도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한 신학적 답이 필요하다. 당신은 피해자이지 죄인이 아니라는 확신,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 ② 둘째, 피해자가 갖는 분노의 감정이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면 “왜 하필 나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어디 있었나?” 하는 등의 분노가 생긴다. 많은 경우 자신이 당한 고통이 하나님께 벌 받아 그러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 벌이 주의 종을 통해 오는 바람에 혼란이 온다. 그래서 정신 이상이 되기도 한다. 피해자가 분노를 느끼는 것은 정당하다. 비버리 해리슨이나 도로테 켈레는 “분노는 여성의 자기 해방을 위한 길”이라고 보고 이를 거룩한 분노라 명명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항변에 대해 연대하는 이들의 신학적 응답이 필요하다.
- ③ 셋째, 용서에 대한 문제다. 목회자에 의해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그 주변에서 피해자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가해자인 목회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더라 가해자를 용서해 주라고 협박과 설득을 한다. 예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주의 종을 용서하고 화해하라.” 그러나 메리 포춘은 화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화해는 깨어진 관계를 서로 좋은 관계로 갱신하는 것이며 깨어진 신뢰 관계로 생긴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다. 만약 정의가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라면, 화해는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를 심는 것이다.”¹⁴⁾ 진정한 회개 없는 값싼 용서는 성폭력당한 이들을 또 한 번 좌절시킨다. 용서와 화해에 대한 신학적 조명이 있어야 한다.
- ④ 넷째, 가해자들이 오용하는 성서들에 대한 명백한 신학적 응답이 있어야 한다.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성서 이야기인 에덴동산의 벌거벗고 부끄러운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와 타락의 해석문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 야곱이 레아와 라헬 등 여러 부인을 거느린 문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도 하나님이 두둔하셨고 그것을 비난했다고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창세기 기사,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으나 회개하고 용서받은 내용, 다윗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주의 종이 잘못했다고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경고, 주의 종을 해롭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협박성의 성서 본문들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해 목회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즉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교회 일을 세상법정에 끌고 가지 말라는 비율의 말,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련을 주지 않으니 참고 견디라,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디라는 베드로전서, 고통 중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라는 히브리 기자의 글 등에 대해 여성신학적 입장에서 하는 성서해석이 필요하다.

14) Rita-Lou, Clark, 『구타당하는 아내』, 권희순 역(한국신학연구소, 1989), p.118.

4. 교회(종교) 내 성폭력 문제의 대안 모색

4-1. 교회(종교) 내 성폭력예방과 추방을 위한 제도 마련과 교육 강화

교회 내에서 성폭력을 근절시키자면 다음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이고, 둘째는 성폭력과 관련된 제 문제를 성직자와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앞의 것은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의 사후 처리 방법이고, 뒤의 것은 성폭력이나 성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의 방식이다.¹⁵⁾ 성폭력 가해자의 징계에 있어서도 여론의 눈치를 보아 가며 징계하는 불확실한 방법보다는 성폭력에 대한 징계의 내용을 확실하게 법으로 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각 교단의 어느 헌법에도 성폭력에 대한 징계를 명시해 놓은 것이 없다.

다음은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한국교회에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다. 이 요구는 1999년 6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가 교회 내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교회의 과제로 요구한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 교회여남평등주간에 “성폭력과 힘의 악용”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교회가 교회내 성폭력에 나설 것을 호소하면서 이 요구를 한국교회의 할 일을 제시하였다.¹⁶⁾ 이 요구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며, 한국교회는 이 요구에 응답해야 할 과제가 있다.

1. 교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교회법을 제정해야 한다.
2. 교회는 교회법에 성폭력의 범죄규정과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제정하고 성폭력을 행한 목회자는 어떤 경우에도 파면되도록 해야 한다.
3. 교단은 성차별과 성폭력예방지침서를 만들고 성폭력에 관한 문제를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4. 각 교단은 성윤리를 위한 목회자 자체 정화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5. 각 교단은 성폭력 피해자 치유와 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후원해야 한다.
6. 교회는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한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을 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성폭력에 대해 말할 때는 성

15) 윤종모, 「교회 내 성폭력 문제의 대안 모색을 위한 제언」, 『한국여성신학 제36호』, 1998.12.p.31.

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16년 교회여남평등주간 “성폭력과 힘의 악용” 자료집. 2016. .46쪽

폭력뿐만 아니라 종교의 성차별과 평등의 문제도 늘 함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서로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차별과 성폭력 등에 관한 지침서를 만들고 교회와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¹⁷⁾ 윤종모 교수는 한국교회에서 발간하는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지침서’의 내용에 대략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제안했다. 첫째는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문제의 본질과, 둘째는 성차별/성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돌봄과 상담이 그것이다.

4-2. 성폭력방지를 위한 여성신학의 중요성

종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의 성차별 때문이다. 종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종교폭력의 산물이다.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신학과 교리, 제도를 평등적으로 바로 잡지 않으면 종교에서 성폭력은 근절될 수가 없다. 가톨릭교회와 개신교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버지는 남자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고 하는, 가부장적 신학과 위계질서가 종교지도자의 여성 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불교의 경우도 비구승이 평신도에게 군림하고 비구가 비구니에게 자행하는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비구중심의 독재체제로 신자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가부장적 종교관행,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는 ‘여인오장설’이나 남자로 바뀌어 성불한다는 ‘변성남자성불사상’, “이승에서 부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정토에 가지 못하고 다음 세상에서 여자로 태어난다.” 등 여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업이 되는 가르침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여성차별을 조장하는 각 종교의 경전들과 남성중심의 신학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 불교의 경전에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성평등적인 모습과 성차별적인 모습 양면성이 있다. 그러나 비구중심으로 이끌려온 승가제도 하에서 성평등성은 약화되고 가부장성이 강화되어 남성우월내지 남성중심적인 성차별 관습과 제도를 고수해왔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성불평등주의적 의식과 제도는 비구니와 여성불자들에게 질곡이 될 수밖에 없다¹⁸⁾. 성차별적 종교를 평등종교로 개혁하는, 신학의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한국교회에서 목회자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은 대부분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성서의 오용이 그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종교 내 성폭력과 관련된 한국종교의 잘못된 인식은 첫째, 종교지도자를 신의 자리에 권위자로 앉혀놓고 그 지도자 말이면 어떤 말이든 곧 신의 말처럼 교인들 앞에 던져지고 있는 한국종교의 계급구조가 문제요, 둘째, 경전 말씀이라면 무조건 어떤 해석이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종교 여신도들의 맹종적인 신앙자세와 경전을

17) 미국에서 “성직자와 종교지도자를 위한 지침서”라는 부제가 달린 <성폭력과 남용 Sexual Assault and Abuse>이라는 책이 1991년에 발간되어 교회에서 성교육지침서로 쓰이고 있으며 캐나다 성공회와 연합교회에서도 교단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모든 성직자에게 교육시키고 있다.

18) 한국염, 「종교의 성차별과 여성인권」,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제주인권학술회의 2002 발표논문집, 2002.163-167쪽에서 부분인용.

진리와는 무관하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해석하고 이용하는 경전해석 문제요, 셋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이면서도 정조를 잃었다는 죄의식을 갖는 유교적 여성관과 가해 종교지도자를 인간이기에 용서해야 한다고 잘못된 사고로 성폭력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가해자의 편에서는 여신도들의 불공정한 사고와 신앙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성해방의 눈으로 신학 하는 여성신학이 필수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신자들이 경전을 몰라서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오용과 잘못된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남성중심, 가부장적으로 해석되고 가르쳐 온 경전을 평등의 시각에서 제대로 읽어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성폭력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신의 형상을 파괴하고 창조주께 반역하는 죄임을 선포해야 한다. 사람의 몸은 신의 성전이라고 했다. 그 성전인 여성의 몸에 성폭력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다. ▲셋째, 교회 내에 올바른 성문화 정착과 교회 구조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가능한 것이다. 평등구조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 ▲넷째, 종교여성들이 깨어나 성평등의식을 갖고 연대해서 성폭력 없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한다. 성폭력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신학적 사고를 가진 종교여성들이 여성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투쟁과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다.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고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나설 때 한국종교에서 성폭력은 사라질 것이다.

5. 나가면서

성폭력이란 근본적으로 힘의 남용에서 비롯되며,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종교의 경우 종교의 권위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하며 종교에서의 성차별이 종교 내 성폭력의 근본원인이다. 종교인 성폭력 문제는 단순한 여성 폭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잘못된 종교 자체의 문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종교인들의 성폭력문제는 성폭력을 한 한 지도자의 일탈로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런 일탈을 가능케 한 종교의 성차별과, 타락, 부패를 문제 삼고 이에 대한 반성 없이는 종교인들의 성폭력은 근절될 수가 없다. 평등한 종교에서는 성폭력이 설 자리가 없다. 그러기에 종교인 성폭력 문제는 성의 문제를 넘어서 신학의 문제이며 종교 개혁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성폭력 추방의 문제는 종교 여성만의 과제가 아니라 종교 개혁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다. ●

종교인의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검토

김 병 규 변호사, 기독교법률가회 사회위원회

안타깝게도 종교인의 성폭력범죄는 현재의 종교사회 내에서 정의의 관념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소하거나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형사제재라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종교인 성폭력범죄 가중처벌의 필요성 내지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② 그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가중처벌 방법에 대해, ③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관련문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종교인 성폭력범죄 가중처벌의 필요성(입법목적) 또는 타당성의 문제

1-1. 헌법적 관점

1-1-1. 종교의 자유, 종교의 제도보장 또는 객관적 가치질서성 (헌법 제20조)

우리 헌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제도보장 또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종교제도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의 성폭력범죄는 종교인의 부패문제와 함께 종교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여 종교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있습니다(최근 언론에서 종교인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는데 그 원인은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선 발제에서 언급된 해당 범죄의 통계를 보면 종교단체가 종교인의 성폭력범죄를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인 성폭력범죄를 일반에 비해 가중처벌 하는 “형사정책적 수단”은, 종교인의 잠재적 성범죄를 예방하고 종교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종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2.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종교인의 성폭력범죄를 비종교인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처벌 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종교인의 경우는 비종교인에 비해 보다 높은 윤리성과 신뢰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정신적, 영적 지배력이 일반에 비해 월등히 큰 만큼 그 남용의 부작용도 심대하므로, 종교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남용하여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일반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인의 성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고, 결국 종교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2. 형사정책적 관점

1-2-1. 종교인 성폭력범죄의 장기적 은닉성, 높은 재범가능성

교인의 성폭력범죄는 종교가 주는 권위와 정신적 지배력을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형태가 많습니다.¹⁹⁾ 피해자들은 상당기간 동안 자신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인 줄 알았다 하더라도 종교의 명예, 종교단체에서의 자신의 지위나 역할, 그리고 가해자인 종교인과의 인적 관계 때문에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교인의 성폭력범죄는 어느 성폭력범죄보다 장기

19) 신앙상담을 빙자하여 친근하고 특수한 관계를 맺은 후 추행을 하는 경우, 신체나 영적 치유를 위한 수단이라고 속이면서 범행을 하는 경우, 경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범죄를 합리화하는 경우 등의 경우.

간 은닉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이와 같은 점을 잘 알고, 또 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이 일반에 비해 아주 높습니다(한국염 목사님의 조사에 따르면 1회성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상습적이라고 합니다). 실제 고소까지 이루어진 사건들 중 상당수도 장기간 은닉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범이 쉽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인 성폭력범죄의 장기적 은닉성, 높은 재범가능성은 종교인의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한 형사정책적 근거가 됩니다.

1-2-2. 사회적 비난가능성

우리 형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저지른 성범죄를 기본적 성범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나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강제추행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의 경우는 업무, 고용과 같은 여타의 사회관계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 경우에 따라서는 신적 존재와 같은 절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피해자는 업무, 고용관계 등에 비해 훨씬 더 열세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다른 사회관계 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국민 일반의 가치관이자 법감정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일반인이나, 업무, 고용 등의 일반 사회관계에 있는 사람보다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고, 이점도 가중처벌의 형사정책적 근거라 볼 수 있습니다.

1-2-3. 사회방위 및 피해자의 인권

종교인의 성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반면,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자정능력은 종교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종교기관은

종교나 기관의 명예를 지키고 관리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고, 범죄자의 징계나 처벌에 대해 소극적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인권은 그만큼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종교의 신자들의 잠재적 성범죄에 대한 안전과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종교인에 대한 가중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종교인 성폭력범죄의 장기적 은닉성, 높은 재범가능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 사회방위 및 피해자의 인권의 측면에서 가중처벌의 형사정책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행위주체 및 행위객체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종교인의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법에서 행위주체 및 행위객체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경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는 행위주체 및 행위객체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음. 성폭력처벌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제6조), 친족관계인 사람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제7조) 등이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아동·청소년²⁰⁾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제7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제8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 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추가로 가중처벌하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²¹⁾의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등의 장, 종사자 등)가 보호, 감독, 진료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추가로 가중처벌하고 있음²²⁾. 해당자가 장애인 또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대상이 자신의 보호, 감독 등을 받는 장애인, 아동·청소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때문에 추가로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0)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1)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후자가 전자보다 더 넓은 개념임.

22) 해당 성폭력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3. 종교인의 성폭력범죄 가중처벌의 법제화 방안

종교인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의 법제화 방안으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종교의 신자'이기만 하면 무조건 가중처벌 하는 방안,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조항을 원용하는 방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가중처벌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3-1.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종교의 신자'이기만 하면 무조건 가중처벌 하는 방안

이는 행위주체와 상관없이, 행위객체를 '종교의 신자'로 규정하는 방안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중처벌 하는 방안입니다. 예컨대,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²³⁾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행위객체에 대해 처벌하는 유사 규정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규정은 행위객체의 특수성(취약성)을 고려한 것입니다(따라서 '종교의 신자'도 해당 성직자에 대해 취약한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교의 신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자는 논의임).

그러나 종교의 신자의 경우 자신의 성직자에 대해서는 취약한 관계에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일반인에 대해서는 취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행위주체(즉 범죄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종교의 신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방안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2. 신고의무자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가중처벌조항을 원용하는 방안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가 정하고 있는 '장애인시설 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의, 보호대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원용하여 종교인²³⁾이 자신의 보호, 감독 등의 대상인 신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종교시설의 장 또는 종교시설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신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23) 법문에서는 종교인, 성직자, 또는 '종교의 직에 있는 자'(형법 제317조 제2항) 등으로 지칭할 수 있을 것임.

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안은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종교인과 신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신자가 그 성직자에 대하여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준하는 정도의 취약성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신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자의 취약성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러야만 위와 같이 행위주체와 행위객체의 특수성만을 이유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것이 근거를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종교인의 성범죄사례에 의하면 종교인의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사례가 상당수인데, 이 경우는 이미 현행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가중처벌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안도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3-3.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가중처벌 하는 방안

형법,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을 처벌하면서 나아가 그 행위대상이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인 경우에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폭행, 협박²⁴⁾에 미치지 못하는 “위계²⁵⁾, 위력²⁶⁾에 의한” 간음, 추행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간음, 추행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음. 즉,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24) 강간죄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이어야 함(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25)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참조).

26)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그 신자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절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종교인은 폭행, 협박이 아니라 위계, 위력에 의해서도 간음, 추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을 하는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한 범죄인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과 같은 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강간,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 성폭력사례에 의하면, 종교인의 신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중 상당수가 위계(예컨대 안수기도를 빙자하여 성추행, 쉽게 말해 속여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력(예컨대 여중생을 야단치는 것처럼 하면서 성추행)에 의한 간음, 추행입니다.²⁷⁾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종교인이 그 신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으로 간음, 추행한 경우는 폭행, 협박에 의한 죄인 강간,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도 위계, 위력으로 간음, 추행한 경우를 강간,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도 종교인의 신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정신적 혼란으로 인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²⁸⁾.

(여기서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의율하면 되지 굳이 위계, 위력에 의한 범죄를 가중처벌 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입증의 정도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항거불능의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²⁹⁾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리하면 종교인의 위계, 위력의 간음, 추행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범죄인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① 종교인(성직자 또는 종교의 직에 있는 자)이 자신의 보호, 감독, 지도,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종교인(성직자 또

27) 박성자, 교회 내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17면.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주최 ‘목회자 성윤리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 자료집.

28)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29)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는 종교의 직에 있는 자)이 자신의 보호, 감독, 지도,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³⁰⁾

물론 형량을 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약간 경하게 볼 것이냐는 좀 더 논의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점을 뒀서 주장하는 것은 종교인의 신자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별도로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 형량은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의 관점에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관련 문제

4-1. 종교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여부

종교인의 성폭력범죄를 위와 같이 가중처벌 할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련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배제는 현행법상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단살해죄(Genocide) 등(동법 제6조),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동법 제3조),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형사소송법 제253조의 2), 중대한 성폭력범죄³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배제규정은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종교인의 성폭력범죄 중 중대한 성폭력범죄는 기존의 성폭력범죄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배제될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인의 성폭력범죄 일반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다른 성폭력범죄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2. 종교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여부 등

30)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의 위력 등에 의한 장애인 간음, 추행에 대한 처벌규정 참조.

31) 13세 미만의 사람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강간 등 살인 등(행위객체가 13세 미만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지 않음).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3항.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³²⁾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³³⁾

종교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도 신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수직적 위계관계가 많기 때문에 종교시설 종사자가 이를 알았다 해도 신고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목사가 담임목사의 범죄를 알았다 해도 인사문제나 부목사 역시 정신적 억압상태에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신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의무는 주의적으로 규정하되, 과태료 제재조항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여성가족부 최혜민 사무관님의 의견에 따라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위해 과태료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3. 취업금지대상의 추가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 취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³⁴⁾

헌법재판소는 올해 초 위 규정을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재범의 가능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 금지한 것이 헌법에 반한다고 하여 위헌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규정이 조만간 현재의 결정취지에 부합하게 관련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최근 뉴스기사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해서 곧 입법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종교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율이 높고, 종교인은 종교시설에서 청소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성가족부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할 때 취업금지대상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종교시설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32)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제67조 제4항.

3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제90조 제3항 제3호의4.

34)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만약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일반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이 부적절하다면, 적어도 해당범죄자가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내의 “아동·청소년 대상 사역”에서는 제외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종사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경력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 경력조치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관련자의 종교시설 등에 대한 취업만 금지하고, 성폭력범죄 경력조치는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취업제한규정의 실효성을 해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반대 입장입니다.)

5. 결론

(1) 종교인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① 종교인(성직자 또는 종교의 직에 있는 자)이 자신의 보호, 감독, 지도,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종교인(성직자 또는 종교의 직에 있는 자)이 자신의 보호, 감독, 지도,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수행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³⁵⁾

(2)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취업금지대상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종교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에 계속됩니다)

35)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의 위력 등에 의한 장애인 간음, 추행에 대한 처벌규정 참조.

6. 개정법률안

6-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____ 추행)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10조(----- 간음, ----)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설) <u>종교인이 자신의 보호, 감독, 지도,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 ④ (신설) <u>종교인이 자신의 보호, 감독, 지도,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⑤ (신설) <u>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신자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u>

6-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생략) 1. ~ 17. (생략) (신설)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1. ~ 17. (현행과 같음) 18.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

7.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응답

7-1. 기존의 업무상 위계위력죄로 처벌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우월적 지배력은 기타 사회관계보다 훨씬 강하고, 종교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은 기타 사회관계보가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업무상 위계위력 범죄와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 처벌규정이 있었어도 범죄수는 증가일로에 있으므로 기존 법조항의 기능을 신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2. 기존의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입증의 정도, 증거에 따라 정신적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많아서 실제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따라서 종교인이라는 사회적 신분과 위계, 위력이라는 행위태양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종교인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종교인의 신자에 대한 위계위력 성범죄의 성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위 규정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법원에 대하여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기능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법 개정 시 고려해야 할 점과 현실적 대안

신 희 영 법무부 검찰국 검사

(현장에서 토론자의 기초 발언을 녹취한 것입니다.)

법무부를 대표하는 의견이라기보다는, 일선에서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경험이 있는 검사 개인 생각이라고 들어주시면 좋겠다. 종교인 성폭력범죄는 공개된 자리에서 꺼내는 것이 어렵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뜻 깊다고 생각한다. 검찰 입장에서 성폭력사건은 매우 어려운 사건이다. 일단 자백하는 피의자 없다. DNA 증거가 나와도 그렇다. 그만큼 극렬하게 다투는 사건이고 증거 확보가 어렵다. 결국 진술 대 진술, 논리 대 논리의 싸움이 된다.

그중에서도 종교계의 성폭력범죄 사건은 더더욱 어렵다. 종교인과 신도라는 특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 성폭력사건의 틀에 맞춰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 성폭력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검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꼭 법을 개정하는 방법이어야 하는지는 의견을 제시한다. 우선 이미 성폭력 처벌 규정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행위의 경중, 나이, 친족이나 보호자 관계 등 아주 따질 것이 많아서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어려워한다. 조건표를 보면 경우의 수가 1600여 가지나 된다.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나왔을 때마다 개정하다 보니 복잡해진 것이다.

검사는 당연히 이를 연구하고 숙지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꼭 경우의 수가 많다고 해서 개정에 머뭇거리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가중처벌 하는 형식으로 법이 개정되면 실제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3년 이상의 징역은 법의 테두리에서 볼 때 매우 엄한 처벌이다.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부가 인정하면 무조건 3년 이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판결을 내릴 때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 성폭력범죄의 잣대로 볼 때도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어려운데,

법 개정이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차라리 법 개정이 아니라 충분한 양형자료를 내세우는 것이 좋겠다. 종교계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를 부각시켜서 양형을 끌어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일이 일선에서 왕왕 있으므로 우려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종교인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어렵다. 형사처벌 규정은 최대한 명확하게 다툼 없이 해야 한다. 종교시설도 모호한 개념이다.

종교인의 성폭력범죄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검사로서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 종교인의 특수성을 최대한 납득시키고 처벌의 엄중함이 명확해지도록 노력하겠다. ●

종교계 성폭력 피해 대응 강화 방안 검토

최혜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사무관

발제문에서 언급되었듯이 종교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목회자·교인 간 위계관계로 인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렵고, 피해 사실을 드러내더라도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을 받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며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을 볼 때 종교계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성폭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15.3.27.)하였고, 이를 통해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에 대해서도 자체 노력 및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종교계 성폭력 피해 대응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교회 내 제도 마련

- 발제자의 지적처럼 종교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회법 및 교회 권징 조례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목회자의 경우 교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교원이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력과 유사하거나 더 크다고 보인다. 교육공무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가해 시 파면·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성인에 대한 성폭력을 저질러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해당 사유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종교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강력한 징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징계 의결 요구 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 징계령」과 유사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가해자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또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회법에 성폭력 피해 전담 상담창구 마련 또는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교회에서 발간하는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지침서’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거친 지침서 내용 보강도 필요하다.

2.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업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여한의사회 등과 각각 간담회를 개최하여 언론보도, 수사재판, 치료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종교계 내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종교계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종교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취업제한 제도 마련 검토

- 「형법」제303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상기 규정의 ‘업무, 고용이나 기타 관계(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 목회자와 교인 간의 관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죄에 종교인에 대한 가중처벌 등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제도의 경우 발제자의 지적처럼 종교시설 종사자가 아동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를 취업제한 시설에 추가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및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의원 남인순

[주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748호

[전화] 02-784-5980

[이메일] nisoona@na.go.kr

[홈페이지] www.nisoona.co.kr



국회의원 권미혁

[주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02-784-7727

[이메일] kwonmh@na.go.kr

[홈페이지] blog.naver.com/kwonmh931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이메일]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



기독교법률가회

[주소] (06596)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7 건물후면 3층

[전화] 070-8883-2062

[이메일] clfkorea@gmail.com

[홈페이지] df.or.kr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법률가회